

주요국 PL 특징

1. 미주지역 PL의 특징

(1) 소송제기가 쉽다

많은 변호사 수 ; 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경쟁적으로 사건을 유치하므로 아주 경미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적은 사고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다.

* 성공보수제도 ; 미국에서의 소송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판결에 승소했을 경우에만 판결금의 30%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성공보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고(피해자)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액의 판결금

배심원제도(Jury System) ; 미국 PL소송에서 책임 유무 및 판결액은 재판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중에서 선발된 배심원(통상 9명)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한 배심원들이 제조업체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 ; 미국에서는 PL소송의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기인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고 배심원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손해액의 수배 또는 수십 배에 달하는 별차성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쉽다.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절차) ; 미주 PL소송의 독특한 제도로서, 소송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로 대등한 조건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생산물의 설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원고도 제조업자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결함여부를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엄격책임제도(Strict liability) ; 피해자로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생산물이 제조, 판매당시부터 결함(안전성의 결여)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피고측의 엄청난 소송비용 ;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측에서도 국내 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방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초기에 적당히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다.

2. EU지역의 PL의 특징

EU 국가의 PL 특징은 다수 국가의 연합형태로서 아래와 같이 국가별 PL 적용 법리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 무과실 책임주의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 과실책임주의 : 이탈리아
- 불법행위책임에 입각한 과실책임주의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이는 유럽지역 내 시장통합에 장애가 됨으로써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새로운 EC 지침이 채택 운영되고 있다.

〈PL관련 EC지침(Directive)의 주요내용〉

1. 무과실책임원칙 :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 : 제1차 농산물을 제외한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 (그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3.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 : [완성품의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제조물에 성명 및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 [EC지역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

4. 입증책임 :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5. 연대책임의 원칙 : 동일한 손해에 대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6. 결함의 판단기준 : 제품이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사용, 제품 유통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3. 일본의 PL의 특징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우유 사건, 1969년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 사건 등을 시발점으로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어느정도 염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큰 혼란없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1.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이 전전되어 제품의 안전성

이 향상

2. 시장전체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품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3. 제조물책임법 개념이 소비자에게 깊숙이 침투되지 않은 점

4. 분쟁해결의 수단인 소송이 소비자에게 저항감이 있는 점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민의식과 사회분위기 및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 있어서의 일본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력등이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한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되었던 결함이 조내즈하지 않았던 사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결함의 규정

결함이라 함은 제품물에 사람의 생명·신체 이외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 제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제품이 최초의 사용자, 소비자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명기된 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중국 PL의 특징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은 가공, 제작한 후에 판매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미가공 농산물 등 제외)

(2) 책임원칙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 결함제품 이외에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단, 생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은 사실



- 부록 -

PL법 시행과 PL보험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해외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정책 정책은 기업의 고도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의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개시되었다.

1963년 미국은 소비자운동이 대단히 활발한 시기로 PL 업격 책임화가 크게 진전되어 불법행위법 상의 업격책임 (Strict Liability in Tort)으로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업격책임이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에서 「그린멘사건」 이후 1970년까지 미국전체 주 재판소에서 PL제도를 채택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어 제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수입한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기업은 필히 수출국의 기업에 대해서 수출제품에 대한 PL 보험증서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수출국의 손해보험회사에는 PL 보험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기업상사 고객에게 의뢰하여 해외 PL 보험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기업의 해외 PL 보험수배요청에 대응한 담보내용이나 약관용어가 틀림으로 현지에서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클레임 에이전트나 제품취급에 관한 PL보험 증명을 요구하는 미국기업의 신용을 얻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미국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제정한 표준품의 PL보험약관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일본 보험사의 경우 1973년 住友해상이 영문 배상책임보험 인기를 취득한 아래 야스다화재, 동경해상, 대정해상, 일본화재 5개사가 ISO품을 기반으로 영문배상책임보험 인기를 취득했다.

국가별로 PL법 시작은 다소 차가 있겠지만 제조물 결함책임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약자인 측면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PL법시행 이후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